##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21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정준호·이학영·임호선

이춘석 • 이강일 • 권칠승

이기헌 • 박홍배 • 김태선

김남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등).

법률 제 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 중 "개최하여야"를 "개최하고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를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시기 및 통합 홍보공간의 운영 방법·절차"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2조제1항"을 "제1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 및 통합 홍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2조의2 중 "제132조제1항"을 "제13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한 자
- 4.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한 자(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 홍보공간 운영 및 시공자 선정 관련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
례) 제29조제8항ㆍ제9항 및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 ⑦ (생 략)	선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	
	음)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	8	
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		
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u>개최하</u>	<u>개최하</u>	
<u>여야</u> 한다.	고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여	
	<u>of</u>	
⑨ 제8항에 따른 <u>합동설명회의</u>	⑨ <u>합동설명회의</u>	
<u>개최 방법이나 시기</u> 등은 국토	토 개최 방법・시기 및 통합 홍보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공간의 운영 방법·절차</u>	
⑩ · ⑪ (생 략)	① · ①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	
령 또는 과징금) ① 시·도지	령 또는 과징금) ①	
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 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 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 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위반한 경우
-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 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 ③ (생 략)

1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u>중 어느 하나를</u>
2
2400
<u>제132</u>
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 저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 략) <<u>선 설></u>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 저자의 관리·감독 의무) 건설업 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u>제132조제1항</u>을 위반하지

4]	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
	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29
	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 및
	통합 홍보공간을 활용하는 경
	<u>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u>
	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u>4</u>
	<u>제1항 각 호, 제2</u>
	<u>항 각 호 또는 제3항</u>
	<u>설치·운영하여야</u>
	한다.
	<u>⑤</u> 제4항
_	
<del>테</del>	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
	자의 관리·감독 의무)
	- 11100 - 111 - 110 - 11
	<u>제132</u> 조제1항 및 제3항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2. (생략) <u><신설></u>

<신 설>

<u>3.</u>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40조(과태료)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
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홍보를
한 자
4.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한 자(용역업체의 임
직원이 제132조제3항을 위반
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